

Latest Legal News and Developments
from the MENA Region

Korean News Digest

Issue #07
(FW 2022)



인사말

안녕하십니까. 알타미미 Korea Group 입니다.

새해 인사를 드린 지 엿그제 같은데 2022년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올해 상반기 중동지역 내 다양한 법률소식을 정리한 일곱 번째 Korean News Digest를 보내드립니다.

올해 중동에서는 상반기에 두바이 엑스포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고, 우리 정부의 중동 3개국 (아랍에미리트,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순방으로 수소, 방산, 교역, 인프라 건설 부문을 중심으로 실질적 성과를 끌어냈습니다. 또한, 국제 유가 상승의 영향으로 중동 지역 산유국 재정 상황이 개선되면서 아국기업의 중동지역 내 사업 수요도 다양한 부문에서 증가하는 추세이며, 한전의 UAE 해외송전망사업, 한수원의 이집트 원전 건설 사업 등 초대형 수주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들 알고 계시다시피 오는 11월에는 전세계가 열광할 카타르 월드컵도 계획되어 있습니다.

저희 알타미미는 중동 및 북아프리카 지역을 대표하는 로펌으로써 지속적으로 서비스 역량을 강화하고 있고, 고객사들의 사업 확장에 발맞추어 자문 국가들도 그에 따라 넓혀 가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4월에는 모로코 카사블랑카에 종합서비스가 가능한 사무소를 개소하여 기존 글로벌고객들의 좋은 반응은 물론, 기존의 아국기업고객들도 저희 모로코 사무소의 서비스를 이용하며 좋은 피드백을 전해주고 계십니다.

저희 Korea Group은 앞으로도 중동 및 북아프리카 전역의 법률 소식을 발 빠르게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변함없이 많은 관심과 성원 보내주심에 감사 말씀드립니다.

Korea Group 배상

주요 연락처



오마르 변호사
Omar Omar
Partner,
Head of Korea Group
o.omar@tamimi.com



하지원 변호사
Jiwon Ha
Senior Counsel
j.ha@tamimi.com



송형민 변호사
Hyungmin Song
Senior Associate
h.song@tamimi.com

Table of Contents

01

The New Rules of the DIAC: an Upgrade to the Centre's Procedural Framework

4

A significant step for investors in Qatar: the Establishment of the Investment and Commerce court

5

Injunctions Preventing a Call on a Bond: potential problems complying the UAE Court's requirements

6

Egypt: Registration mandatory for foreign factories and trademark-owning companies

7

Iraqi Federal Supreme Court Issue a Decision of the Unconstitutionality of KRG Oil & Gas Law

8

10 Things you Should Know About the New UAE Labour Law

9

Regional Headquarters Programme: Franchise Arrangements under KSA Law

10

Global Trademarks - UAE to join the Madrid Protocol

14

02

Al Tamimi & Company News

15

03

Korea Group Deals & Cases

17

04

Korea Group News

20

The New Rules of the DIAC: an Upgrade to the Centre's Procedural Framework

- 두 바 이 국 제 중 재 센 터 (Dubai International Arbitration Centre 또는 DIAC)는 2007 중재규칙(DIAC Arbitration Rules 2007)을 가지고 있었는데, 두바이국제중재센터에 관한 2021년 두바이령 제34호(Decree No 34 of 2021 Concerning the Dubai International Arbitration Centre)의 시행에 이어 2022 신규칙(DIAC Arbitration Rules 2022)이 2022년 3월 2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신규칙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재지

- 신규칙 제20조 제1호에 따르면 당사자들의 합의가 없는 경우 중재지는 두바이국제금융센터(Dubai International Financial Centre)로 하되, 중재판정부가 당해 사안의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다른 장소가 더 적합하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기존규칙 하에서는 당사자들의 합의가 없는 경우 중재지는 두바이였습니다.

중재법원

- 중재법원(Arbitration Court)은 기존의 위원회(Executive Committee)를 대체하는데 주목할 것은 신규칙 제34조 제5항이 중재판정부로 하여금 판정서 초안을 서명 전에 중재법원에 제출하도록 한다는 점 입니다. 중재법원은 중재판정의 형식을 검토하게 됩니다.

기술

- 신규칙 제26조 제1항은 중재판정부가 전화 내지 화상 회의(video conferencing)를 활용하여 중재사건의 심리를 진행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으며, 이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보입니다. 제20조 제3항에서는 중재판정의 전자서명이 가능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중재인의 선정

- 신규칙 제13조는 당사자들의 합의가 있는 경우 단독중재인 내지 의장중재인 선정에 일종의 명부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이에 따르면 사무국이 중재인 후보자 3명을 선택하고 단독중재인 선정의 경우 그 명단을 당사자들에게 송부하여 희망순위를 표시하도록 하고, 의장중재인 선정의 경우 그 명단을 공동중재인들에게 송부하여 희망순위를 표시하도록 합니다.

신속절차

- 신규칙 제32조는 신속절차(expedited proceedings)를 규정합니다. 이에 따르면 당사자 간에 신속절차에 따르기로는 별도의 합의가 있거나, 분쟁금액이 AED 1,000,000 이하이거나, 중재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예외적으로 긴급성을 인정하는 경우 신속절차가 적용되는데, 그 경우 중재판정부는 중재기록을 전달받은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중재판정을 내려야 한다.

중재비용

- 신규칙은 제36조 제1항에서 중재비용에 중재당사자에 의하여 발생한 법률비용을 포함시키는데, 그 부담은 전적으로 중재판정부의 판단에 맡기고 있습니다. 중재비용은 양당사자가 균분하여 예납하는데, 여기에는 법률비용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 부록 1 제3조에 따르면 어떤 당사자든지 주된 신청 또는 반대신청비용에 관한 예납금을 전액 납부할 수 있고, 이 경우 중간판정을 통해 다른 당사자에게서 비용의 반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기사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June 2022

<https://turtl.tamimi.com/story/law-update-issue-348-tmt/page/22/1>

A significant step for investors in Qatar: the Establishment of the Investment and Commerce court

- 2022년 7월 4일 카타르 정부는 투자 및 무역법원(Investment and Trade Court) 설립에 관한 2021년 법 제 21호를 발효하였습니다. 투자 및 무역법원은 1심과 2심의 심급제도를 두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할

- 재판관할규칙은 제7조에서 규정하는데, 이에 따르면 투자 및 무역법원은 비카타르국인의 투자, 지식재산권, 전자상거래, 대리상, 민관협력, 도산 등에 관한 사건에 대하여 전속관할을 인정합니다. 제9조는 임시적 처분을 위한 관할을 명시합니다.

전자적 수단

- 제13조 내지 제14조에 따르면 서류제출, 비용납부 등이 전자적으로 이루어지고, 제16조에서 사건관리실의 설립을 요하므로 시간 및 비용의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한

- 제19조는 피고로 하여금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제20조는 원고로 하여금 15일 이내에 그에 대한 서면을 제출하도록 합니다. 피고는 다시 10일 이내에 서면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재판부는 기록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내에 사건을 심리해야 하는데, 다만 독자적으로 45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기한의 명시를 통해 신속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전문가

- 제26조는 당사자들로 하여금 대상인 분쟁과 관련된 분야의 전문가를 선정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전문가의 보고서는 전자적 수단을 통해 법원에 제출될 수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기사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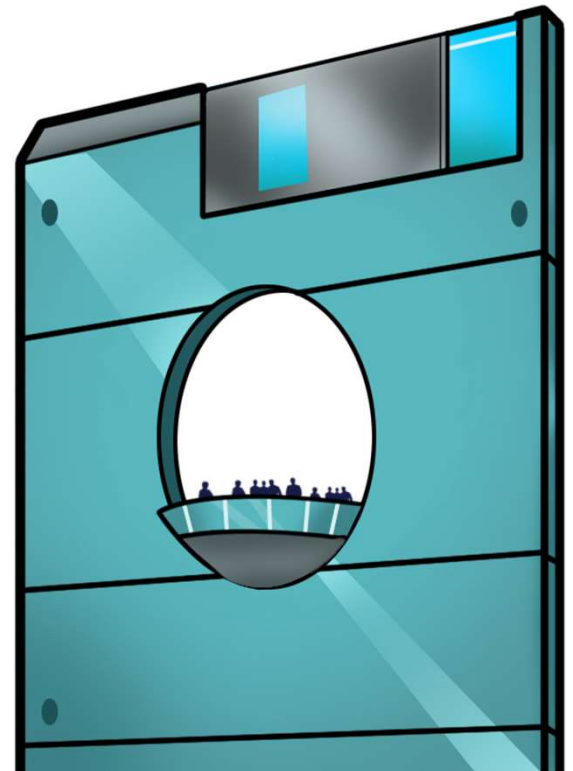


July 2022

<https://turtl.tamimi.com/story/law-update-issue-349-real-estate-construction-and-real-estate-construction-and-hotels-and-leisure/page/21/1>

Injunctions Preventing a Call on a Bond: potential problems complying the UAE Court's requirements

- UAE 건설 시장은 일반적으로 분쟁해결과 관련하여 FIDIC 표준 계약 양식 혹은 그에 준하는 유사조항을 가진 양식이 주로 통용됩니다. 대체적으로는 중재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도록 하고 있지만, 중재에 이르기까지는 당사자들로 하여금 협상, 합의 혹은 조정 등의 다양한 ADR 절차를 사전에 시도할 것을 규정하고 있기도 합니다.
- 문제는 이러한 ADR 절차는 상당기간을 요구하기 때문에, 실제 UAE 법원에서의 본드콜집행과 관련하여 도급자로서 계약상의 중재 사전절차를 준수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 예를 들어 건설계약상 도급자(Contractor)가 발주처에 전체기성의 10%에 달하는 이행보증(P본드)를 제공한 상황에서, 발주처가 본드콜을 하려 하는 경우, 도급자는 이를 막기 위하여 UAE 법원에 가압류 혹은 가처분 등의 임시적 금지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도급자의 이러한 요청이 받아들여진다고 하더라도 UAE 민사소송법 255(2)항에 따르면 가처분 신청자는 처분이 이루어진 날로부터 반드시 8일 이내에 본안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데, 이는 결국 도급자가 계약상의 사전절차를 준수하지 못한 채 중재신청을 해야 하는 상황을 야기합니다. 법률상 요구되는 8일 이내에 중재 신청을 하지 못한다면 인정된 가처분 조치 역시 해제되기 때문입니다.
- 만약 FIDIC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면, 도급자는 클레임 인지일로부터 28일 이내에 반드시 통지를 해야 하고, 분쟁조정위원회 (DAB)에 먼저 사안을 회부한 뒤 56일 이내에 원만한 합의 시도를 해야 하는데, 이는 UAE 법률상의 요건과 상충되는 부분입니다.
- 발주처로서는 도급자가 중재를 조기에 개시하는 경우, 중재가 8일 이내에 개시되기는 했지만 사용자는 계약상 절차를 거치지 않았음을 주장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궁극적으로 도급자는 법률상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1차 중재 개시 이후, 계약상의 후속절차를 이행한 뒤, 유예된 중재를 재시작하는 절차를 거치게 될 수도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기사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July 2022

<https://turtl.tamimi.com/story/law-update-issue-349-real-estate-construction-and-real-estate-construction-and-hotels-and-leisure/page/10/1>

Egypt: Registration mandatory for foreign factories and trademark-owning companies

- 이집트 수출입 관리국(General Organization for Import and Export Control; GOEIC)은 2022년 4월 17일, 통상부(Ministry of Trade & Industry)가 지난 2016년 공포한 장관령 (Ministerial Decree no. 43 of 2016; 이하 “구 장관령”)를 위반한 다수의 법인 및 제조사에 대하여 이집트 수입을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 구 장관령은 이집트에 제품을 수출하기 위한 회사 및 공장 등의 등록 조건을 명시하고 있으며, 이러한 등록 조건은 2022년 3월 21일 새롭게 공포된 장관령 (Ministerial Decree no. 195 of 2022; 이하 “신규 장관령”)에 따라 개정되었습니다.
- 구 장관령에 따르면, 아래의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에는 해외에서 이집트로 제품이 수입되더라도 세관에서 해당 제품의 반출을 금지하게 됩니다.
 - 수출자가 제조공장인 경우 아래의 문서들을 구비하여 당국에 등록을 해야 합니다.
 - 1) 등록 신청서;
 - 2) 제조사의 사업자등록증 및 관련 면허;
 - 3) 생산하는 제품과 상표권에 대한 설명;
 - 4) 상표권을 보유한 회사가 품질 관리 시스템을 가지고 있음을 나타내는 증명서. 해당 인증서는 국제인증연맹(ILAC), 국제인증포럼(IAF) 또는 대외무역 담당 장관이 승인한 정부 기관에서 인정해야 함.
 - 수출자가 상표권을 보유한 회사의 경우 아래의 문서들을 구비하여 당국에 등록을 해야 합니다.
 - 1) 등록 신청서;
 - 2) 상표권 증빙 서류;
 - 3) 이집트내 유통회사가 해당 상표권의 제품을 공급할 수 있다는 증빙 서류;
 - 4) 해당 제품을 공급할 수 있는 유통 센터를 나타내는 상표를 소유한 회사의 인증서 및 상표 소유 회사가 품질 관리 시스템을 가지고 있음을

나타내는 증명서. 해당 인증서는 국제인증연맹(ILAC), 국제인증포럼(IAF) 또는 대외무역 담당 장관이 승인한 정부 기관에서 인정해야 함.

신규장관령의 주요내용

- 상기 구 장관령의 요건에 더해 신규장관령은 해외제조공장 및 상표권을 보유한 회사에 대한 등록 절차와 관련하여 아래의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 등록서류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등록이 이루어지며, 문서의 진위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회사 혹은 공장에 대한 조사를 요청할 수 있음;
 - 문서 등록은 관련 국가의 대사관 및 영사관을 통해 제출할 수 있음;
 - 등록된 각 문서들은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갱신해야 함.
 - 모든 등록 또는 취소를 이집트 관보와 GOEIC 웹사이트에 게시하여 함.
- 2022년 4월 18일, GOEIC에서는 별도의 성명을 통해 이번 수입 중단 결정에 포함된 대부분의 업체 및 제조공장들의 경우, 등록된 문서들을 갱신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밝히며, 문서가 만료되는 경우 GOEIC 웹 사이트를 통해 위반 업체와 제조공장에 2주 동안 통지한다고 언급했습니다.
- 이 기간 중 갱신된 문서가 등록되지 않는 경우 향후 1년간 해당 업체 제품의 수입이 중단되며, 이것이 반복되는 경우, 향후 이집트내에 자사 제품을 유통하는 것이 완전히 금지될 수도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기사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April 2022

<https://www.tamimi.com/news/egypt-registration-mandatory-for-foreign-factories-and-trademark-owning-companies/>

Iraqi Federal Supreme Court Issue a Decision of the Unconstitutionality of KRG Oil & Gas Law

- 2022년 2월 15일 이라크 연방 대법원은 쿠르드자치정부의 원유 가스 법 (Oil & Gas Law of Kurdistan Region Government No. 22 of 2007)이 2005년 발효된 이라크 연방헌법을 위반한다는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 본 결정은 쿠르드자치정부는 쿠르드지역내 모든 유전과 원유생산과 관련된 권한 일체를 연방정부에 이양하도록 함과 동시에, 쿠르드자치정부가 해외정부 및 다수의 글로벌업체들과 체결한 모든 원유 관련 계약들을 무효화하고 연방정부로 하여금 해당 계약들을 다시 검토하도록 하였습니다.
-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기사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February 2022

<https://www.tamimi.com/news/iraqi-federal-supreme-court-issue-a-decision-of-the-unconstitutionality-of-kr-g-oil-gas-law/>

10 Things you Should Know About the New UAE Labour Law

- 올해 2월 2일자로 UAE 에서는 신규 노동법(Federal Decree Law No. 33 of 2021 Regulating Labour Relations)과 그 시행령(Executive Regulations under Cabinet Resolution No.1 of 2022)이 발효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 개정된 노동법에서 반드시 숙지해야 할 10가지 사항을 아래와 같이 정리해 드리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무기한 계약(unlimited term contracts) 형태가 없으며, 모든 고용계약은 최대 3년 이하의 기간제 계약(Fixed Term)으로 한다. 2023년 2월 2일까지 고용주는 모든 기존 무기한계약을 기간제계약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 수습(Probation)기간에도 고용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서로 최소 14일의 사전통지를 해야 합니다. 만약 해당 직원이 UAE 내의 다른 회사로 이직하기 위해 퇴사를 하는 경우에는 30일의 사전통지를 해야 하며, 기존 회사에서는 신규 고용주에게 해당직원에게 채용관련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파트타임, 임시직, 고용유연제, 잡채어링 등 기존에 없던 다양한 고용 및 근무형태가 도입되었습니다.
 - 예전에는 금요일은 법정 휴무일이었지만, 이제는 고용주가 특정 요일에 상관없이 휴무일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피고용인은 고용주가 허가하지 않는 한 해당 연도에 발생하는 연차는 이월하지 않고 반드시 해당 연도 이내에 소진해야 하고, 사용하지 않은 연차는 보상없이 몰수됩니다.
 - 기타 휴가
 - 육아휴직: 최대 60일 (45일은 급여 100% 보전, 그 다음 15일은 50% 급여 보전)
 - 장례휴가: 배우자 사망 시 5일, 직계 가족 (부모, 조부모, 자녀, 손주) 사망 시 3일
 - 출산휴가: 5일 (남편, 아내 모두에게 해당하며 아이 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사용해야 함)
 - 학습휴가: 근속 2년 이상의 직원이 UAE 내 인가받은 고등교육기관에서 수학하고 있는 경우, 매년 10일의 학습휴가 (Study Leave) 가능.
 - 인종, 성별, 종교, 국적 등의 이유로 한 차별, 출산 및 육아휴직 등의 사유로 한 해고 등이 금지됩니다. 남녀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이 적용됩니다.
 - 기간제계약이라고 하더라도 계약상의 통지를 따르면 적법한 사유로 인한 해고는 언제든지 가능하며, 고용주의 사정상 필요한 정리해고도 적법한 사유에 해당합니다.
 - 예전에는 5년 이내 시작하는 근로자의 경우 퇴직금이 주어지는 불이익을 받았고, 불법적인 행위 등으로 인한 징계해고시에는 퇴직금이 몰수되었지만, 신규노동법하에서는 그 어떤 경우에도 퇴직금이 보전됩니다.
 - 고용주는 직원 퇴직 시 반드시 14일 이내에 계약상 잔여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시 노동부는 고용주에게 최소 AED 5,000, 최대 1,000,000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기사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August 2021

<https://www.tamimi.com/law-update-articles/10-things-you-should-know-about-the-new-uae-labour-law/>

Regional Headquarters Programme

- Regional Headquarter("RHQ") 프로그램은 Vision 2030 계획에 따라 사우디 투자부(Ministry of Investment) 및 리야드시 왕립위원회(Royal Commission for Riyadh City)에 의하여 공동으로 개발된 프로그램으로서 글로벌 기업들의 RHQ를 사우디 아라비아로 이전시키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우디에서 공공계약을 수주하기 위해서는 사우디에 RHQ를 설립하여야 합니다.
- RHQ 프로그램은 방송, 통신, 기술 분야를 포함하여 모든 산업 분야에 적용됩니다. 사우디 투자부의 발표에 따르면, 핵심 글로벌 기업들이 RHQ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으며, 이는 향후 수년내에 사우디 아라비아의 투자 환경이 크게 변화할 것임을 의미합니다.

주요 정의

- 투자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RHQ는 "중동, 북아프리카 지역에서 활동하는 다국적 기업집단의 자회사, 지사, 기타 계열사들의 업무를 지원, 관리하고 전략적 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사우디 아라비아에 설립된 다국적 기업집단의 한 유닛"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 "다국적 기업집단"이란 외국에 모회사를 가지고 있는 기업집단으로서 그 모회사, 자회사, 지사 또는 계열사들을 통해 1개 이상의 국가에서 영업을 수행하고 있는 기업집단을 의미합니다.
- "중동, 북아프리카 지역"은 GCC 국가들(사우디 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쿠웨이트, 바레인, 오만 및 카타르), 예멘, 이라크, 요르단, 팔레스타인, 레바논, 시리아, 이집트, 리비아, 튀니지, 알제리, 모리타니 및 모로코를 포함합니다.
- RHQ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사우디 아라비아 및 모기업의 설립 국가를 제외한 최소 2개 국가에서 최소 2개의 자회사 또는 지사를 운영하고 있는 다국적 기업집단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사우디 아라비아에서 외국 회사로 적법하게 등록되어 있을 것
 - 별도의 법인격을 가질 것

- 물리적인 사무실이 존재하고 다국적 기업집단의 지역적 행정 중심지로 활동할 것
- 매출을 창출하는 상업적 영업행위를 수행하지 아니할 것

자본금 요건

- 최소 자본금 요건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는 RHQ가 상업적 영업행위를 수행할 수 없다는 요건에 부합합니다.

RHQ의 업무

- RHQ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 RHQ 라이선스를 위하여 필수적인 업무
 - 전략적 방향 수립 및 제공 업무 (예를 들어, 다국적 기업집단의 지역적 전략을 공식화하고 모니터링하는 업무)
 - 관리 기능 (예를 들어, 비즈니스 플래닝)
 - 적어도 3가지의 선택적 업무 – 판매 및 마케팅 지원 업무, 인사 관리 업무 등 포함

RHQ의 임직원

- 사우디 투자부의 가이드라인은 RHQ 임직원의 최소 인원 및 책임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RHQ 라이선스의 추가적인 요건

- 다국적 기업집단은 RHQ 라이선스 발행일로부터 6개월 내에 RHQ의 필수 업무를 개시하여야 하고, 1년 내에 3개의 선택적 업무를 시작하여야 합니다.
- RHQ는 가이드라인에서 정한 최소 인원 이상의 임직원을 보유하여야 합니다.

June 2022

<https://turtl.tamimi.com/story/law-update-issue-348-tmt/page/20>

RHQ 프로그램의 인센티브

- 구체적인 인센티브는 아직 확인하기 어려운 단계에 있으나 사우디 투자부는 다음과 같은 인센티브가 제공될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 Saudization의 면제
 - 비자 한도의 면제
 - 일괄적인 비즈니스 서비스
 - 배우자 및 직계존속에 대한 work permit 제공
 - 기타 인센티브

RHQ의 설립

- RHQ의 설립을 위하여 RHQ는 별도의 RHQ 라이선스를 취득하여야 합니다. RHQ 라이선스 취득을 위하여 RHQ는 비즈니스 플랜, 다국적 기업집단 소속 기업들 중에서 RHQ의 지원 및 관리를 받게 될 기업들의 명단 등 사우디 투자부가 요청하는 문서들을 제출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기사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RHQ프로그램의 의미

- 사우디에서 공공계약을 수주하기 위해서는 사우디에 RHQ를 설립하여야 합니다 - 이는 2024년 1월 1일까지 입법화되어야 합니다. 이 원칙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입법화될지는 향후 주목해야할 과제이지만, 향후 사우디 아라비아의 투자 환경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점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June 2022

<https://turtl.tamimi.com/story/law-update-issue-348-tmt/page/20>

Franchise Arrangements under KSA La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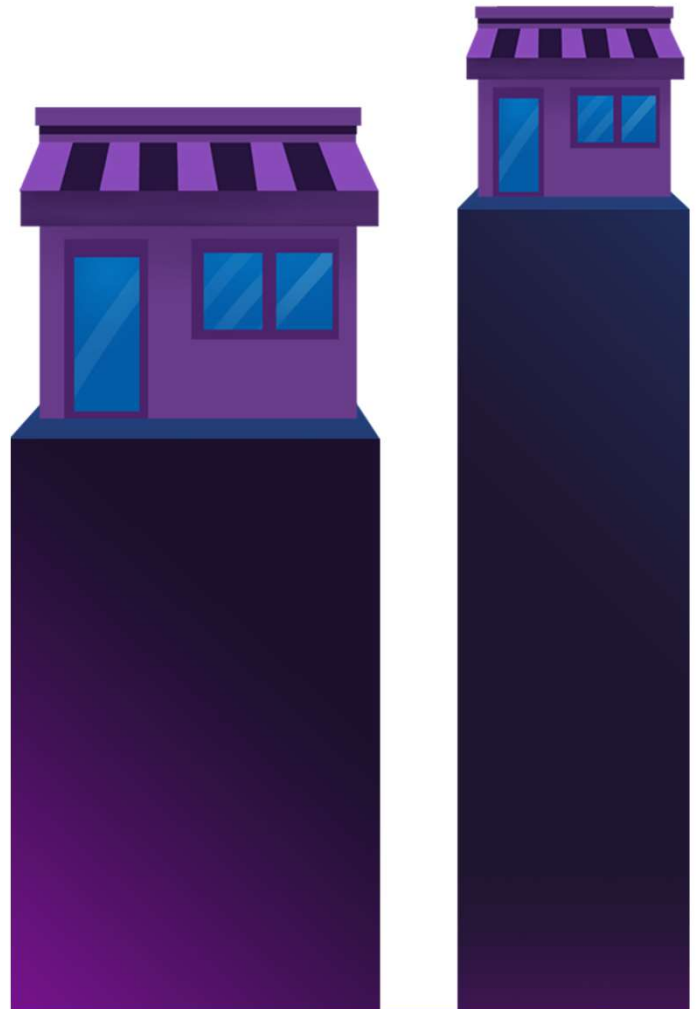
- 사우디 프랜차이즈법(Royal Decree No. 9152)의 제정 이전에 프랜차이즈 계약은 Commercial Agency 계약으로 분류되었으며 “Commercial Agency Law” 및 그 시행령의 규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사우디 프랜차이즈법 제정 이후 프랜차이즈 계약은 동법 및 그 시행령의 규율을 받고 있습니다. 프랜차이즈법 제정 이전에 체결된 프랜차이즈 계약의 경우에도 프랜차이즈법의 일부 조항들이 적용됩니다.
- 프랜차이즈 사업자가 정보공개서 및 계약 등록에 관한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가맹점은 (i) 그러한 의무 위반을 알게 된 날로부터 1년 또는 (ii) 의무 위반이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중 더 빠른 날까지 서면으로 프랜차이즈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어떠한 배상 의무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 또한, 프랜차이즈 사업자가 정보공개서 및 계약 등록에 관한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가맹점은 그러한 위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어떠한 손해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프랜차이즈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그러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최대 500,000 사우디 리알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계약의 정의 및 요건

- 프랜차이즈법 제1조는 프랜차이즈 계약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사업자가 가맹점에게 프랜차이즈의 대상이 되는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권리(프랜차이즈 사업자가 소유하고 있거나 라이선스를 가지고 있는 상표권 및 사업 수행의 방식을 결정하는 프랜차이즈 사업자의 전문적 기술 혹은 know-how)를 부여하는 계약으로서, 그 계약에 대한 대가로서, 프랜차이즈 사업자가 가맹점에게 제공한 물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대가 이외의, 다른 금전적 혹은 비금전적 대가가 지급되는 계약”
- 프랜차이즈의 대상이 되는 사업이 적어도 2인 (프랜차이즈 사업자 또는 사업자 그룹의 멤버를 포함할 수 있음) 또는 2개의 분리된 유닛에 의하여 적어도 1년간 Franchise Operation Model에 따라 운영된 경우에만 프랜차이즈 계약의 체결이 가능합니다.

프랜차이즈 계약의 등록 및 정보공개서

- 프랜차이즈 사업자는 (i) 프랜차이즈 계약의 체결일 또는 (ii) 프랜차이즈와 관련하여 프랜차이즈 사업자에게 대가가 지급되는 날 중 더 빠른 날로부터 최소 14일 이전에 정보공개서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정보공개서는 아랍어로 작성되어야 하며, 다른 언어로 작성된 경우에는 인증된 번역가에 의하여 아랍어로 번역되어야 합니다. 정보공개서는 시행령에 기재된 요건들에 부합하여야 합니다.
- 프랜차이즈 사업자는 체결된 프랜차이즈 계약 및 정보공개서를 프랜차이즈 계약 체결일로부터 90일 내에 Ministry of Commerce에 등록할 의무가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계약은 아랍어로 작성되어야 하며, 다른 언어로 작성된 경우 인증된 번역가에 의하여 아랍어로 번역되어야 합니다. 프랜차이즈 계약의 등록은 Monshaat이란 포털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April 2022

<https://www.tamimi.com/law-update-articles/franchise-arrangements-under-ksa-law/>

프랜차이즈 계약의 조건들

- 프랜차이즈계약은 당사자들이 합의한 다른 계약적 조건들과 함께 아래에 열거된 조항들을 포함하고 있어야 합니다.
 - 프랜차이즈 사업의 이름과 내용, 프랜차이즈 계약의 조건들 및 그 조건들을 변경하기 위한 방법, 지역적 범위
 - 프랜차이즈 사업자가 가맹점 근로자의 교육과 관련하여 부담하는 교육의무
 - 기술, 마케팅 및 프랜차이즈 사업이 요구하는 전문적 지식 혹은 기술의 공급과 관련하여 프랜차이즈 사업자가 부담하는 공급 의무
 - 프랜차이즈 사업과 관련하여 가맹점이 행사할 수 있는 상표권 및 기타 지적재산권
 - 지적재산권의 침해시 계약당사자들이 부담하는 의무 및 손해배상
 - 프랜차이즈 계약의 해지와 관련된 계약당사자들의 권리와 의무
 - 프랜차이즈 계약의 갱신에 관한 사항

— 프랜차이즈 계약에서 별도로 적용의 배제를 규정하지 않는 이상 법에 의하여 적용되는 규정들이 존재하며, 이는 계약당사자들의 의무, 프랜차이즈계약의 이전, 가맹점의 지배구조 변화, 프랜차이즈 계약의 갱신에 관한 조항들을 포함합니다.

- 프랜차이즈법의 제정전에는 샤리아법을 포함하여 사우디법에 저촉되지 않는 이상 계약당사자들의 합의 사항이 모두 프랜차이즈 계약에 반영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프랜차이즈법의 제정으로 인하여 그러한 합의 사항이 프랜차이즈법의 강행규정에 반하는 것은 아닌지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기사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April 2022

<https://www.tamimi.com/law-update-articles/franchise-arrangements-under-ksa-law/>

Global Trademarks

- UAE to join the Madrid Protocol

- 아랍에미리트(UAE) 정부는 지난 2021년 9월 28일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사무총장에게 마드리드 의정서 가입서를 기탁했습니다. 이에 따라 UAE는 국제 상표등록 체제인 마드리드 시스템의 109번째 가입국이 되었습니다.
- 본 의정서는 UAE에 대해 2021년 12월 28일 발효되었으며, UAE는 걸프협력회의(GCC) 국가 중 바레인, 오만과 함께 마드리드 시스템에 가입한 세번째 국가가 되었습니다.

마드리드 의정서란?

- 마드리드는 의정서는 WIPO의 국제사무국 관할 아래 있는 국제 조약으로 세계 각국에서 등록된 상표권을 통합적으로 관리 및 보호하는 데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
- 본 의정서는 1989년에 채택되었으며 마드리드 시스템은 상표출원인이 현지(본국)특허청에서 진행한 기초출원에 근거하여 동시에 여러 해외 지정국가에서 상표 등록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이렇게 일원화된 절차로 상표등록을 진행할 수 있어 절차 및 비용적인 면에서 큰 장점이 있습니다. 현재 2022년 8월 기준 마드리드 의정서 가입국은 수는 112개국이며, 전 세계 128개 국가에서 상표권 출원이 인정됩니다.

UAE 현지 브랜드 소유업체

- UAE의 마드리드 의정서 가입으로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를 포함한 현지 기업체는 마드리드 의정서의 간소한 등록 절차를 통해 국제적으로 상표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 먼저 UAE 특허청을 통해 출원한 상표를 바탕으로 WIPO에 단일 출원서 및 수수료를 제출 합니다. 그 후 WIPO에서는 동 출원서를 각 국가의 특허청에 배부, 심사하도록 함으로써 미국, 중국, 일본 및 인도와 같은 주요 시장 뿐만 아니라 112 개의 가입국에서 국제등록을 획득하고 상표권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 브랜드 소유업체

- UAE가 마드리드 시스템을 도입하기 전에는 현지 대리인을 이용한 상표권 출원만이 가능했고, 출원 비용도 높은 편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외국 기업이 국제상표 출원과

관련하여 의정서 가입국을 다수 지정할 때 UAE는 대상 국가가 아니었는데, 2021년 12월 28일부터는 UAE도 마드리드 시스템을 이용하여 상표권을 확보할 수 있는 국가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더 많은 외국 기업이 UAE에서도 보다 편리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상표권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출원 시 유의사항

- 물론 마드리드 시스템을 이용하여 국제상표출원을 하더라도, 브랜드 목적에 적합한지, 사전에 지정국에서 상표가 등록될 수 있는지에 대한 조사와 구체적인 등록가능성에 대해 현지대리인/전문가와 상담 후 상표권 출원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국제상표출원은 다수의 국가에서 일관되게 사용 및 표시되는 상표권에 특히 적합합니다. 상표가 현지 문화 및 시장성에 따라 변형되어야 하는 경우, 현지 맞춤형 상표권을 보호하기 위해 현지출원을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역사적인 이유로 일부 특정 관할 지역에서 특정 상표권이 제한 되었을 경우, 가능한 한 현지 경쟁사와의 상표권 분쟁을 피하기 위해 권리 취득 신청서(International Right, IR)를 변경해야 합니다.
- 국제상표출원과 관련하여 출원 지정 국가 수는 제한이 없지만, 출원 국가 수에 따라 현지 출원이 비용적인 면에서 더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마드리드 시스템을 이용한 국제상표출원은 상표권을 보다 포괄적으로 보호할 수 있다는 큰 이점이 있지만, 여전히 현지 출원이 필요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전략적으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 지난 5년 동안 캐나다, 브라질, 인도네시아, 태국, 파키스탄, 말레이시아 등 다수의 국가가 마드리드 의정서에 가입했고, 가입국의 수는 지속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또한 마드리드 국제출원시 지정하지 않았던 국가(국제출원시 가입하지 않았던 새로운 가입국 포함)를 사후에 지정할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가입국도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기사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June 2022

<https://turtl.tamimi.com/story/law-update-issue-348-tmt/page/23/1>

Al Tamimi & Company News



Al Tamimi & Company News

알타미미 모로코 카사블랑카 사무소 개소

저희 알타미미는 지난 4월 모로코 사무소를 개소하여, 중동 및 북아프리카 진출 및 투자를 고려하고 있는 고객사들에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카사블랑카에 소재한 알타미미 모로코 사무소는 Nesrine Roudane 파트너 변호사가 사무소장으로 상주하며, 부동산, 제조업, 에너지 및 인프라, 금융, 관광업 등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법률자문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모로코는 중동 국가 중에서도 정치적 안정성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유럽 및 아프리카를 잇는 지정학적 이점을 보유하고 있어 이미 아프리카로 통하는 비즈니스 허브로 발전하고 있기에, 이번 저희의 모로코 사무소 개소는 작년 3월에 개소한 이집트의 Port Said 사무소와의 시너지를 통해 아프리카 진출 및 투자를 희망하는 아국 기업에 폭넓은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로써 알타미미는 GCC 6개국 외에도 이라크, 요르단, 이집트, 모로코를 포함하는 총 10개국에 17개 사무소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 ■ ■
Welcome
Thomas Calvert
Partner, Head
of Corporate
Commercial - Iraq



Thomas Calvert 영입 인사 - 이라크 기업자문 (Corporate Commercial) 부문 역량 강화

저희 알타미미는 지난 4월, Thomas Calvert 파트너 변호사를 이라크 기업자문 (Corporate Commercial) 총괄로 신규 영입하며 이라크 사무소의 자문 역량을 크게 강화하였습니다.

Thomas 변호사는 알타미미 합류 이전에 다년간 이라크내 주요 메이저 글로벌 기업들을 자문하였고, 특히 NIC 를 비롯한 이라크내 국영 발주처를 상대로 하는 대형 Oil & Gas 프로젝트와 인프라건설 일에 많이 참여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어 향후 주로 국영발주처를 상대해야 하는 한국기업들을 자문하는 데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Korea Group Deals & Cases



Korea Group Deals & Cases

저희 알타미미 한국팀의 2022 상반기 주요 업무 사례를 소개합니다.

국내 대형건설사의 SIAC 중재판정의 UAE 내 집행 및 가압류 관련 자문

알타미미의 하지원 변호사와 두바이 송무팀은 국내대형건설사가 싱가포르국제중재센터(SIAC)를 통한 중재사건에서 승소한 중재판정을 UAE 당사자를 대상으로 UAE 법원에 집행을 요청하고 승소금액을 회수하기 위하여 자산을 압류하기 위한 과정 전반에 관련하여 자문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계약 당시 UAE 당사자가 개인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의 법인격을 부인하고 개인주주에게까지 실질적 책임을 지을 수 있는 방안 등에 대한 UAE 법률상의 입장에 대해 상세한 자문이 이루어졌습니다.

중동 국가에서 국내기업들이 연루되는 대부분의 분쟁 사건을 고려해 볼 때 분쟁을 개시하기 전에 무엇보다 중요하게 해야 하는 사항은 해당 분쟁의 승소가능성 보다는 오히려 승소 이후 해당 판정 및 판결을 집행하고 어떻게 상대방당사자로부터 실질적으로 승소금액을 회수할 수 있는지의 여부입니다. 지역의 특성상 회사명으로 부동산이나 현금성 자산을 현지에 보유하거나 재투자하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실제 회수가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법인격 부인을 통해 배후의 실질적 지배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는 사항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저희 알타미미는 거래상대방에 대한 실사와 보유자산 조사, 해외 중재판정 및 해외법원판결의 역내 로컬법원에서의 집행과 가압류, 가처분 조치 등과 관련 가장 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국내 스타트업의 UAE 사업확장 관련 법률 자문

하지원 변호사는 국내 유명 스마트팜 스타트업으로부터 UAE 내 추가적인 사업확장을 위한 양해각서 작성 및 검토 요청을 받아 법률 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UAE 정부는 최근 2 - 3년 전부터 탈 석유화시대를 대비하여, 안전한 먹거리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농업 관련 기술과 인재확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 우수 업체는 사물인터넷(IoT), 수직농장 등 척박한 환경에서도 농작물 재배가 가능한 기술 덕분에 UAE 정부의 지속적인 러브콜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 알타미미는 스타트업 및 벤처기업 등의 투자 유치 및 현지 사업운영과 관련한 폭넓은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률자문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저희 한국팀 변호사들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국내 대형감리회사의 사우디 JV 지분 인수 건 자문

송형민 변호사는 국내 대형감리회사의 사우디 JV 지분 인수를 성공적으로 자문하였습니다. 송형민 변호사와 알타미미 M&A 팀은 본 JV 지분인수 건과 관련하여 유리한 조건으로 주식 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고, 상대방의 거래종결 지연에도 불구하고 오랜 협상 끝에 거래를 종결하였습니다.

송형민 변호사와 알타미미 M&A팀은 거래의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절차에 걸쳐 현지 회사법 등 관련 법률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고 매수인을 대리하였으며, JV는 국내 대형감리회사의 100% 자회사로 전환하여 성공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국내 대형 조선사에 UAE 내 부가세 환급 관련 자문

하지원 변호사와 알타미미 조세팀은 UAE 내에서 역내 현지업체와 컨소시엄을 이루어 공사를 수행한 국내 대형 조선사가 의뢰한 부가세 신고 및 환급 건에 자문하였습니다. 계약당시에는 고려되지 않았던 공사대금에 대한 부가세가 공사기간 도중 시행되고 부과되기 시작하며 발생한 문제로써 컨소시엄 멤버간 부가세 분담 합의, 실제 공사수행 장소와 관련한 고정사업장 이슈 등의 요소를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했던 사안입니다.

조세 분야는 현재 중동지역에서 가장 빠르게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고 발전하고 있는 분야입니다. 이에 저희 알타미미는 최대규모의 조세팀을 조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매해 해당분야 Band 1 / Tier 1 로펌으로 선정되며 그 역량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국내 정부기관의 UAE 중소기업 및 정부조달제도 현지 조사 및 자문

하지원 변호사는 국내 정부기관에 중소기업 및 정부조달제도 관련 UAE 법률과 제도에 관하여 자문하였습니다.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본 자문 건에는 강윤정 연구원이 함께 참여하였으며, 저희 알타미미가 보유한 현지 공공기관과의 밀접한 협력관계를 적극 활용하여 UAE 정부에서 시행중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금융지원 프로그램 및 관련 법령에 대해 상세 연구결과를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Korea Group Deals & Cases

국내 대형건설사의 출자전환 자문

송형민 변호사와 알타미미 기업팀과 조세팀은 국내 대형건설사의 출자전환에 대하여 자문하였습니다. 사우디법상 출자전환은 회사법 및 세법상 고려해야 할 법률적 쟁점들이 많은 거래로 송형민 변호사와 알타미미팀은 회사법 및 세법상 관련 쟁점들을 심도깊게 연구하여 관련 법상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국내 중소기업의 UAE 스폰서 계약해지 관련 자문

하지원 변호사는 국내 전기공사 전문업체의 UAE 스폰서 계약해지 관련한 법률자문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해당 업체는 UAE 국적을 보유한 개인을 스폰서로 선임하여 현지에서 사업활동을 영위하였으나, 스폰서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인해 스폰서 변경이 불가피하였고, 유족 측에서 무슬림 관련 이슈를 관할하는 샤리아 법원에 별도 사망 신고를 하지 않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저희 알타미미는 인적 네트워크 및 현지 법·제도에 대한 탁월한 이해도를 바탕으로, 해당 업체의 스폰서 변경이 지체되지 않도록 신속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국내 유명 프랜차이즈 업체의 바레인 상표권 침해 소송 대리 및 자문

저희 알타미미는 국내 유명 프랜차이즈 업체를 대리하여 바레인 내 상표권 침해 소송을 개시하였습니다. 가맹계약이 종료된 이후 가맹점 측에서 가맹본부 동의 없이 해당 국가에 상표권을 등록하고 영업을 계속하여 발생한 사안으로, 최근 들어 중동 전역에서 각종 한국산 제품 및 식품 등이 인기를 끌면서, 현지 업체들이 국내 업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도용하는 경우가 잦아지고 있습니다. 상표권 침해는 국내 업체의 인지도 및 현지 평판 뿐만 아니라 추후 사업활동에도 막대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중동 진출 이전에 해당 국가에 상표권을 등록하여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현재 저희 알타미미는 KOTRA와 연계하여 아랍에미리트,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 바레인, 이집트, 이라크, 요르단, 오만, 카타르 등 다수의 중동국가에서 상표권 출원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중동 국가 내 상표권 등록 절차와 상표권 등록시 고려 사항 등에 대한 관련 상담 및 실무 진행은 한국팀 하지원 변호사 (UAE 상주)와 송형민 변호사 (KSA 상주)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Korea Group News



Korea Group News

KEB 하나은행 UAE 거주 임직원 대상으로 금융이슈 관련 워크숍 진행

알타미미 한국팀의 하지원 변호사는 지난 2월 2일, 아부다비 금융팀의 Mark Brown 파트너 변호사 및 Ashish Banga 변호사와 함께 KEB 하나은행 아부다비지점 및 두바이 사무소분들을 모시고 "UAE의 부동산 담보대출 (Lending and Taking Security in the UAE)"을 주제로 하는 고객사워크숍을 진행하였습니다.

하지원 변호사, UAE 노동법 및 현지 법률동향 관련 특강 진행

알타미미 한국팀의 하지원 변호사는 지난 3월 3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Korea SMEs Startups Agency; 이하 "중진공")이 주최한 2022년도 제 1차 두바이 Business Incubator 자문회의에서 "UAE 노동법과 현지 법률동향"에 대해 강의를 진행하였습니다. 두바이에 진출한 10여개의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본 강의에서 하지원 변호사는 아국기업이 UAE에서 반드시 유의해야 할 노동법 관련 이슈에 대해 발표하였고, 간단한 질의응답 세션을 통해 궁금증을 해소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지원 변호사는 2021년부터 중진공 자문변호사로 임명되어 활동하고 있으며, 국내 중소기업의 성공적인 중동시장 진출 및 현지 정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원 변호사, 2022 UAE 경제동향 및 법인세 세미나 연사로 참석

지난 3월 8일, KOTRA 중동지역본부와 UAE 한인경제인협의회가 공동 주최한 "2022 UAE 경제동향 및 법인세" 세미나에서 하지원 변호사는 연사로 참석하여, 법인세 도입 및 신규 노동법 대응전략에 대해 발표하였습니다.

하지원 변호사, 메디컬코리아 2022에서 UAE 헬스케어부문 동향 발표

지난 3월 10일, 알타미미 한국팀의 하지원 변호사는 메디컬코리아 2022에서 "2020-21년도 UAE 주요 헬스케어 법률 및 규제정책 동향"에 대해 발표하였습니다. 화상으로 진행된 본 세션에서

하지원 변호사는 지난 2년간 UAE내에서 시행된 코로나 19 관련 주요 규정/가이드라인을 소개하고, 헬스케어 부문 관련 신규 법률 동향에 대해 심도 있는 발표를 진행하였습니다.

하지원 변호사는 2017년부터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이하 "보건원")에서 위촉하는 의료 해외진출 컨설팅 전문위원 (Global Healthcare Key Opinion Leader)으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으며, 국내 의료기관 및 의료인력의 중동 진출 관련 자문에 힘을 뿐만 아니라, 정기적으로 보건원에 현지 헬스케어부문 관련 법률/규제 동향에 대해 기고하고 있습니다.

알타미미, HSBC와 중동지역 내 ESG 관련 웨비나 공동 주최

알타미미는 지난 3월 15일, HSBC와 공동으로 "중동의 ESG 정책/규제동향 및 지속가능금융"을 주제로 하는 웨비나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아국기업들만을 대상으로 특별히 기획된 본 웨비나에는 알타미미에서 ESG 그룹장을 맡고 있는 Frank Patalong 변호사와 하지원 변호사가 연사로 참여하여 중동지역 내 ESG 동향에 대해 발표를 진행하였습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여주신 많은 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웨비나 녹화영상은 하기 링크를 통해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웨비나 다시보기: <https://bit.ly/3JNRlvo>

하지원 변호사, 국내 자동차제조사 임직원 대상으로 노동법 관련 워크숍 진행

알타미미 한국팀의 하지원 변호사는 지난 3월 21일, 국내 자동차제조사의 두바이 사무소 임직원을 대상으로 UAE 노동법 개정내용에 대한 워크숍을 진행하였습니다.



Korea Group - Al Tamimi & Company - MENA



Al Tamimi & Company



@AlTamimiCompany

www.tamimi.com

